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113281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원용, 김진형, 김
현, 김효준, 맹수진, 박정훈, 박종진, 서동민, 신제영, 원시우, 이에
슬, 이정

피 고 주식회사 B(변경 전 :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7.부터 2022. 4.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천종호

[별지]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의 내용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1. 5. 14. 피고와 의약외품 마스크(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합니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C입니다. (갑 제1호증 - 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원·피고 사업자등록증, 피고의 상호변경 통지서, 갑 제2호증의 4 내지 5 - 원·피고 법인등기부등본).

나.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D 캐릭터 디자인이 담긴 마스크를 생산해서 피고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 계약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제작을 위탁하고, 이후 원고가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피고가 발주하여 매수하기로 한다[계약서 제1조(목적)].

② 피고는 원고가 상품 제작에 필요한 권리(신청외 주식회사 D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한다. 그 대가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후 피고가 D 캐릭터 저작권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는 추가로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저작권 구입비용은 제품단가에 반영하여 공제할 수 있다[계약서 제5조(계약금 및 보증금)].

③ 피고는 2021연도 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보증수량인 5,000,000개 이상을 원고에게 발주하며, 원고는 이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 피고에 대한 발주사실을 증명한다. 2021년 이후의 발주 보증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갑, 을의 협의로 정한다(계약서 제7조[개별계약 및 보증수량]).

다시 정리하자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①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 제작에 필요한 상품 관련 저작권을 확보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계약금 200,000,000원 선지급하고, 이후 피고가 저작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원고에 이전할 시에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저작권 이전이 완료되면 이후, 2021년도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된 이 사건 상품 수량인 5백 만개를 발주한다. 발주를 받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확보한 저작권을 바탕으로 이 사건 상품을 제작하여 완성된 제품을 피고에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상품

대금 받는 것입니다.

다. 계약금의 지급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2021. 5. 17. 피고에게 약정된 계약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총 2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 거래내역확인증, 갑 제4호증 - 전자세금계산서). 계약금 지급 이후, 원고는 피고 요구에 따라 마스크 제작을 위한 금형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고, 채무이행과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갑 제5호증 - 금형납품대금 수취내역, 갑 제6호증 - 21. 5. 26. 계약 진행 관련 제1차 회의록)

2. 채무불이행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발생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1) 피고의 연락 회피 및 두절

피고의 대표이사는 계약을 체결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에 불과한 21. 6. 중순부터 원고가 해제권 행사하여 통지한 21. 11. 중순까지 계약에 있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원고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여러 차례 만남의 요청을 거절해왔습니다(소갑 제6호증 - 21. 5. 26. 계약 진행 관련 제1차 회의록, 소갑 제7호증 - 카카오톡 대화내용, 소갑 제8호증 - 21. 10. 6 - 계약 진행 관련 제2차 회의록).

이후 계약 진행에 관한 관심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의욕은 원고만의 것이었고, 피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이행 준비나 실행은 한 바가 없습니다.

이하 첨부하는 자료를 통해 그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첨부 ① : 갑 제7호증 -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일부 내용



관련 자료 첨부 ② : 갑 제6호증 - 21. 5. 26. 계약 진행 관련 제1차 회의록 내용

회의일자	2021년 05월 26일	작성자	
시간	14:10~15:30 (80분)	장소	대학교 내
건명	마스크 진행사항 문의 및 요구 및 문의 사항		
참석자	갑 사 (소속/직위/성명)	연명	
	상무/이사	2명	
	갑 대 사 (소속/직위/성명)	연명	
	대표/전무/전 이사	3명	
미팅내용	1. 마스크 성형기 제작하여야 하는데 AI 파일만 보내고 CAD 파일을 보내주시 못해 진행 불가함. 관련 E/R 요청했으나 진행이 되지 않음.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기 할때 CAD 파일형으로 변경하면 됨. 일러스트 관련 인쇄 AI 파일 변경 가능 확인 후 설계실에 정보 지수 기입 및 진행. 혹시 모르니 [] 통보 금형틀더 1개 예비품 받아 실측 해 보자 위 2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빠른 진행을 하자. 2. [] 에 원심무지 달았지 연락할 구축하자. 대표와 지주 이야기 하기 할드나 일부자들 연락할 구축하여 일부 진행 필요 가독방을 개설하여 연락할 구축하자. 3. [] 요청사항 ① [] 의 2D 마스크 전체 진행 일정 스케줄은? (재봉 줄서 / 인허가 잔적 사항 / 2공장 승인 진행 사항/ [] 조적도등) ② 제품 생산 원자재 등록 현황 및 거래 공급 방법? 거래처? 구매 단기 및 구매 조건 ③ 출시 제품의 디자인 캐릭터 종류 및 사이즈, 마스크 사이즈 (표준규격) 3.6.1에 문의 사항이나 요구 사항 요청 일록		

관련 자료 첨부 ③ : 갑 제8호증 - 21. 10. 06. 계약 진행 관련 제2차 회의록 내용

문서번호			
회의일자	2021년 10월 06일	회의시간	14:30 ~ 16:00 (90분)
회의장소	대학교 캠퍼스내	작성자	
참석대상수	2	참석자수	2
		불참자수	0
회의제목	2D 마스크 KC 생산 지연 및 전체 진행 계획		
회의안건	1. 2D KC 생산 미진행관련 사유 및 차후 일정 2. 계약하고 지금까지 생산 관련 아무런 E/R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3. 상생협력하기로 했는데, 뭐가 회피하는것 같은 느낌은? 진행 안되는 전일 공유 요청 4. 계약 위반대인가? 현재 2D 마스크 사업의 문제점 공유		
회의내용	1. 일전에 방문했을때 [] 대표에서 '이야기만 푸른 KC 관련 일정 및 내용에 반영할지이다. ① [] 협의 완료하는데 왜 지금까지 생산계획 및 생산 생산 파우치 진행이 되지 않은가? ② [] 대표 배운것은 이해하는데, 일부러 전화나 문자 카톡을 피하는것 같다. 아무리 배빠도 이런 마냥것 같다. - [] 전무, 2D 관련 전부 [] 대표가 단독 진행하는 부분이라 공유나 계약 내용 모른다. 2. KC 혹은 2D 마스크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기 3D는 완성하면서 거래하는데 2D는??? - 같이 상생하기로 했는데, 왜 문제점 및 고민사항을 공유 하지 않는가? 승기는것이 있는것 아니냐? - 솔직히 판매가 어렵거나 KC 인증 아직 진행을 못했더라든 문제를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 또한 정보 공유해 야 차점 파트나 하니까? 계약금 받고 8월 출시 10월 출시 11월 출시, 계속 일정만 밀린다. (김영애에게 기다리는 거임) 3. 아무리 배빠도 계약금 2억을 받고 다른것 하는것 같다. 미안해서라도 대구 방문해서 진행사항 공유 해야 하는것 아닌가? - [] 전무, [] 대표님 오늘 미팅한 내용 전달해서 회신 하겠다. 본연도 2D 마스크 계약이 어찌 되었는 지 모름. 4. 2D 마스크 제작은 대구에서만 하는것 아닌가? 왜 다른곳에서 2D 마스크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가? - 김리부식포 사용 마스크 KC는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 생산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가?		

이로 인해 원고는 저작권 취득 및 이전 관련 진행 상황, 마스크의 개별 단가 등 어떠한 계약의 기본적인 자료·정보를 피고로부터 받지 못했고, 세부 협의조차도 피고의 연락 회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어떠한 채무이행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의 비협조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계약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2) 피고는 D 저작권을 취득하여 원고에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이 사건 계약 전,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확보 가능성 및 능력에 의문을 품고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외 주식회사 E - 피고 간 체결한 F 위탁제조판매 계약서를 제시하며, 그것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원고를 설득했습니다(갑 제9호증 - 위탁제조판매 계약서).

위 계약의 내용상 주식회사 E는 D 캐릭터를 한국 내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자이고, 피고에 대해 이 D 캐릭터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조항에 의해 피고는 계약상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고, 따라서 현재 원고는 위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설령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에 의해 위탁받은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위 주식회사 E - 피고 간 작성된 계약의 내용과 피고의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단순 마스크 제조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단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불과하고 D와 같은 대기업의 저작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이전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을 당시까지 저작권 취득 및 이전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구상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단 하나의 제품조차 원고에 발주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1년 11월경 원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루어진 피고와의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2021. 7. ~ 8. 이미 부도 위기를 맞았었고, 피고 회사 포함, 피고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까지 마스크 사업으로 인해 약 30억 ~ 40억 손해를 보아 심각한 경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채무인 저작권 취득은 물론 기본적인 상품 발주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자인하며, 원고가 계약을 해제를 선택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자신의 귀책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갑 제10호증 - 21. 11. 11. 계약 진행 관련 제3차 회의록 내용)

관련 자료 첨부 ④ : 갑 제10호증 - 21. 11. 11. 계약 진행 관련 제3차 회의록 내용

문서번호			
회의일자	2021년 11월 11일	회의시간	13:40 ~ 15:10 (90분)
회의장소	대학교 캠퍼스내	작성 자	
참석대상수	3	참석자수	3
		불참자수	0
회의제목	와 간의 마스크 계약발주 지연 사유 및 계약 파기 통보건		
회의연건	1. 마스크 발주 지연 사유 2. 입찰 통보 (계약 파기) 및 의견 3. 앞으로 방향 및 방향 4. 금일 논의 내용 영사간 정리		
회의내용	1. 발주에 대한 트라우마 발생 (마스크 3D 재고 물량 판매 저조) - 2월 가장 힘든시기 (부도위기)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극복되어 가는중. - 대표 2개 회사중 마스크 사업에 On Line 플랫폼회사 자금을 마스크로 돌려 회사 2곳 경영위기 On Line 플랫폼 지분 매각및 경영권 포기후 지분분배/ 마스크 하면서 30-40억 정도 매이네스 되어 있음. - 2D 마스크 까지 발주하고 판매 못해서 에 자금을 하지 못할것을 두려워 발주 계획을 세우지 못함. 2. 금일 방문목적은 그동안의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문제로 계약 파기 통보 및 대표님 의견 전달 - 대표 에서 만약 계약 파기한다고 하면 계약금 환불 하도록 하였으며, 2D 마스크 사업은 는 지속 할 예정이다. 여정에 대해서는 대표님 의견에 따르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한번 해 볼 예정이다.(현재 및 일부 공급계약 도 체결중이며, 재물승인 준비 및 파우치 승인 등 지연되었지만 출시 예정이다.) - 금일방문목적은 계약해지통보이지만 그동안 왜 방문 및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 사유와 발주 지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하며, 입당하지 않는 이유일 경우 해지 통보 및 계약금 환불일지를 받기 위함이다 도 라는 브랜드의 생산검형과 이를 통해 상생하려 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취득 및 이전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될 나머지 계약 내용에 따른 피고의 채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여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나. 피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 해제통지

원고는 2021. 11. 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고, 2021. 11. 18. 을 계약 파기일로 적시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저작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선지급했던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220,000,000원의 즉시 반환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소갑 제 11호증 - 계약 종료(파기, 폐기) 공문]

위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2021. 11. 15. 행사 당일 공문 발송 및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갑 제12호증 - 원고의 해지 통보 내역)

다. 소결 - 원상회복청구권의 존재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계약금 및 부가가치세 총 220,000,000원 및 돈을 지급한 날인 2021. 5. 17.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반환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다만, 채권자는 우선 원상회복청구권 총 채권액(220,000,000원)의 일부청구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7.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합니다.

3. 결 어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

